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6-1호

발행일: 2026. 1. 29. (목)

제430회 국회(임시회, 2025. 12. 10. ~ 2026. 1. 8.)

제431회 국회(임시회, 2026. 1. 12. ~ 2026. 2. 1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토큰증권 제도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 1. 개관

제431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15일 ~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1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제430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 12월 23일 ~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 12월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4건, 2건, 6건으로 모두 1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1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부동산 · 음원 · 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0회 국회 제1차 ~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가맹점 사업자단체 ·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항목에서 법적 비용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0회 국회의 2025년 12월 11일 ~ 14일, 23일 ~ 24일, 30일 본회의, 제431회 2026년 1월 15일 ~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4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1 | 법제사법위원회(4) |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성윤 의원 등 39인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2  | 법제사법위원회(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 3  |                  | 12 · 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 4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 5  | 정무위원회(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6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7  |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8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 9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 의원 등 11인  |
| 10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 의원 등 11인  |
| 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1)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 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 13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 14 | 국방위원회(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 15 | 행정안전위원회(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 16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 17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 18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 19 | 보건복지위원회(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 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 21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    | 소관위원회(건)   | 의안명                                   | 제안자     |
|----|------------|---------------------------------------|---------|
| 22 | 국토교통위원회(3)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br>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 23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 24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br>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토큰증권 제도화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책 이슈

### 토큰증권 제도화

#### 개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증권을 특정 형태·방식으로만 발행·유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토큰증권의 수요는 증권과 디지털자산 시장 양쪽에서 제기되어, 정부는 증권인 디지털자산(증권형 코인)의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2030년 글로벌 토큰증권 자산은 16조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도 2024년 34조 원(GDP 대비 1.5%)에서 2030년 367조 원(GDP 대비 1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   | 소관위원회 | 의안명과 주요 내용                                                                                                                                                                                                                                                                                                                                                                                                                                                                                                                                                                                                                                                                                                                                                                                                                               | 의결일자<br>(본회의 결과)     |
|---|-------|------------------------------------------------------------------------------------------------------------------------------------------------------------------------------------------------------------------------------------------------------------------------------------------------------------------------------------------------------------------------------------------------------------------------------------------------------------------------------------------------------------------------------------------------------------------------------------------------------------------------------------------------------------------------------------------------------------------------------------------------------------------------------------------------------------------------------------------|----------------------|
| 1 |       | <p><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 2026-01-15<br>(원안가결) |
| 2 | 정무위원회 | <p><b>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의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법 체계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 2026-01-15<br>(원안가결) |

## 정책 동향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금융위)

#### □ 과제목표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관련 제도 정비
-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 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 추진
  - 이에 더해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
-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추진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5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5. 1. 8.)

#### □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투자 여건 개선

- ① <sup>1)</sup>대체거래소(ATS) 출범(25.3월), <sup>2)</sup>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25.6월) 및 <sup>3)</sup>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유통플랫폼 다변화
  - \* 1) 거래시간 연장(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새로운 호가 도입, 수수료 절감 등
  - 2) 해외 야간 파생시장 대비 거래상품(5개→10개)·시간(11시간→12시간) 확대
  - 3)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
- ②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sup>1)</sup>STO(토큰증권)와 <sup>2)</sup>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 \* 1) 실물·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유통·관리 가능
  - 2)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융자산 수익증권 활용 조각투자 제도화
- ③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누리집

2026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5. 12. 19.)

□ 비상장·중소기업도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① 토큰증권(STO) 제도화(약 1년후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준비<sup>[국정48]</sup>

\*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테스트, 공시·투자자보호 등 세부제도 설계 등

②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 완화

- \* ① (소액공모) 現) 10억원 → 改) 30억원(예시)  
② (플랫폼) 수요자(벤처·중소기업)-공급자(금투업계) 간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③ (전자등록기관) 예탁결제원 외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 전문기관 허가 추진

출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 참고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안: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 2025. 2.

민병덕 의원안: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 2025. 2.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STO(토큰증권)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분석: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의원정책자료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국회의원 정책자료

토큰증권의 미래: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토큰증권 제도화: 혁신과 신뢰의 기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5. 10. 31.

신종 비정형증권의 등장 및 성장과 함께,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였다. 향후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신속한 법개정 논의, 증권성 판단 기준 명확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및 공정한 가치평가 체계 확립 등 혁신과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촉매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국의 토큰화 증권 도입 현황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2025. 10. 2.

- [이슈] 전통 증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화 증권/토큰증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중개화, 거래 효율성 제고 등 잠재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 법적 불확실성 등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
- [토큰화 증권 사례] 현재 민간에서 출시된 상품은 가격 연계 파생상품과 유사하며, 실제 주식보유 및 권리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토큰화 증권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거래소 인프라 정비의 경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
- [평가] 토큰화 증권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자 보호 및 제도적·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민간 주도 사례가 단기간 내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2025-01호 2025. 9. 11.

-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sup>1)</sup> (2023. 2. 6.)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 토큰증권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 토큰증권을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자 함
- 자본시장법 개정안
  -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특정 규정(발행 관련)에 한해서만 증권으로 간주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했던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
  - 제166조 개정을 통해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제도화
- 전자증권법 개정안
  -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발행 및 유통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고 분산형 전자증권과 중앙형 전자증권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절차를 마련
  - 초과분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권한 부여 및 법위반시 제재 조치 규정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4-12 2024. 6. 20.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정비는 토큰증권이라는 신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토큰증권 시장에 관련한 이슈를 증권성 이슈, 전자증권법 이슈, 자본시장법 이슈로 분류하여 각 이슈별 발전 방안을 장단기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이슈에 있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훼손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엄격한 증권성 심사를 하여 가상자산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 규정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성 심사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토큰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분산원장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산의 토큰화 이외에 결제수단의 토큰화가 가져다주는 혁신성과 효용을 인정하며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정형증권 유통 및 장외거래중개업에 관한 제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과 전통적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거래시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통일된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 현대화된 장외거래에 적용되기에는 과잉규제적 성격이 큰 매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